

#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03
------	------

2025. 6. 27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김형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6.1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형재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 (안 제10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 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<sup>1)</sup>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박물관 자료수집과 관련한 원칙을 신설하였고, 박물관이 소장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--

1) 제9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) ...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인력, 수장(收藏)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. ...

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이와는 별개로 1998년<sup>2)</sup>부터 동 조례의 이전 조례인 「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」<sup>3)</sup>에 의거하여 박물관 자료(유물)의 관리·수리·복원·복제·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료(유물)관리관 등을 지정하고 있음.

-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계천박물관, 한양도성박물관, 서울생활사 박물관, 우리소리박물관 등 고유한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분관을 두고 있음.

따라서 분관에서도 박물관 자료를 자체 등록 및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며, 본관과 분관 간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임 형태로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.

#### 다.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(안 제10조제1항)

- 동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 공무원에 대해 분임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#### 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	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2) 한성백제박물관 분리(2015년) 이전.

3) 2016년 7월 18일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타법폐지 되었음.

- 동 조례안의 ‘자료관리관 등 지정’은 상위법령의 의무 부과를 이행하는 규정이므로,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‘별도의 분임 지정’을 신설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  
- 또한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유한 역사적 소재로 구분되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 안정화를 도모하고, 통합적인 박물관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  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문성호, 송경택,  
윤종복, 이상욱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 (안 제10조의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분임을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(자료관리관 등 지정)에 분임 자료 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통상 분임 공무원 지정에 수반되는 별다른 비용 발생요인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명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